



## 축산법중 개정법률

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자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分野 産業技士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는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아지생산농가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畜産物의 等級判定所)"을 "(畜産物等級判定所)"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畜産物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畜産物等級判定所(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畜産物等級判定
2. 畜産物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畜産物等級判定技術의 개발
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畜産物等級判定士의 養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

## 부 칙

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⑨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民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등급판정사) ①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  
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  
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  
하는 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  
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판정  
소가 이를 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 "借入金 또는 出資金"을 "借入  
金"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林部長  
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林部長官"으  
로,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發展  
基金 貸損補填"을 "基金貸損補填"으로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  
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  
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및 후단중 "農業協同  
組合中央會"를 각각 "등급판정소"로 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農林部長官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  
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大統領令  
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별직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급판  
정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 내  
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  
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  
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  
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  
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  
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  
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  
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  
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  
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  
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  
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  
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